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372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변론 종결 2016. 9. 28.

판결 선고 2016. 10. 1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표의 피고별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H, I, K, L, M, N, O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2항(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F, J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하성우

별지